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3
----------	-----

2011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5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으로 개원  
(2011.05.27)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의 명칭에 노인이 명시되어 있어 노인요양병원이나, 또는 이용대상이 노인으  
로 국한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명칭에서 노인을 삭제함으로써 아급성기 노인환자  
의 입원치료 및 일반시민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 현행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별표1】 및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항의 병원 순서를  
일반종합병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정신병원 순으로 조정하여 통일성  
을 갖추하고자 함.
- 신설 병원의 관리·위탁 근거 마련과, 북부노인병원 명칭에서 '노인'의 삭제 등을 통하여 시립  
병원의 공공진료 기능 확대 및 시민의 시립병원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함.

###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신축·개원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신설하고, 조례상의 시립병원 명칭과 순서를 일치시켜 정비하며,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시민들의 병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병원 명칭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당초 ‘(가칭)양천메디컬센터’ 명칭을 선정하는데 있어, 시민이 참여한 공모 방법 등에 따른 것으로,
  - 양천구 신정동 소재(신정3택지개발지구내) 연면적 39,262㎡(지하4, 지상8), 350병상 규모로 2006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1월에 준공, 금년 5월 개원하였으며, 주로 노인성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며, 서남권의 공공의료기능을 담당할 것임.
-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은, ‘노인’ 부분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개칭하였는데,
  - 이는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병원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용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으로까지 확대하여 공공의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병원 명칭 순서(안 제3조 관련 별표1 및 제10조 제2항)는 종합병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장애인 치과병원, 정신병원 순으로 정비한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서남병원이 2011년 5월 27일에 개원했는데, 법적 준거를 미리 갖추지 못하고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임. 명칭 개정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개원진척 상황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임. 차후 조례개정과 행정행위가 일치하도록 하겠음.
- 질의 :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은 ‘노인’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개칭하였음. 그런데 신내동에 서울의료원이 개원했기 때문에, ‘노인’을 삽입되는 것이 더 좋을 듯함.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 답변 :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의 명칭에 노인이 포함되면, 노인요양병원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이용대상이 노인으로만 국한된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음. 앞으로 노인환자의 입원치료 및 일반시민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노인'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3.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6.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7.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8.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9.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60(내곡동 6-7)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북병원길 47(역촌동 산31)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길93(응암동 232-3)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길 39(신대방동 425)	일반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79(용두동 118-20)	일반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길 48(망우동 22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162-1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3(홍익동 102)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26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li> <li>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li> <li>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li> <li>2.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li> <li>3.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li> <li>5.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li> <li>6. 서울특별시 동부병원</li> <li>7.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li> <li>8.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li> </ol>	<p>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서울특별시 동부병원</u></li> <li>3. <u>서울특별시 북부병원</u></li> <li>4. <u>서울특별시 서남병원</u></li> <li>5. <u>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u></li> <li>6. <u>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u></li> <li>7. <u>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u></li> <li>8. <u>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u></li> <li>9. <u>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u></li> </ol>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60 (내곡동 6-7)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60 (내곡동 6-7)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북병원길 47 (역촌동 산31)	잔병 및 노인성 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북병원길 47 (역촌동 산31)	잔병 및 노인성 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길93 (응암동 232-3)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길93 (응암동 232-3)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길 39 (신대방동 425)	일반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길 39 (신대방동 425)	일반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79 (용두동 118-20)	일반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79 (용두동 118-20)	일반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길 48 (방우동 22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길 48 (방우동 22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b>&lt;신 설&gt;</b>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0-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3 (홍익동 102)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3 (홍익동 102)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26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26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정신질환자 전문진료